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결합당사회사와 공정위 간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운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공정위는 2024. 8. 7.자로 개정·시행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III.항에 사전협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4. 8. 16. 사전협의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운영방안」(이하 '운영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제도 활용 시 공정위가 결합당사회사 현황, 관련시장 현황,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식 신고 후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정식 신고 후 승인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의 개요 및 근거 규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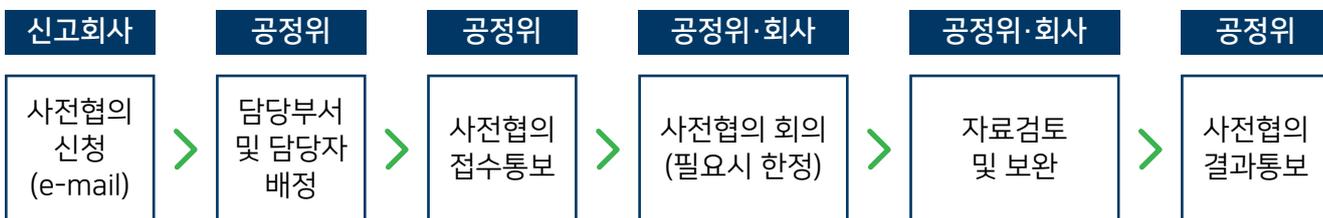
1. 사전협의 제도 개요 및 근거 규정

사전협의 절차란 결합당사회사가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공정위에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공정위는 정식 신고 전부터 당사회사 현황, 관련 시장 현황, 경쟁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 규정은 2024. 8. 7.자로 개정 및 시행된 신고요령 III.항으로, 이에 따르면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merger@korea.kr)을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운영방안상 사전협의 절차

공정위가 2024. 8. 16. 발표한 운영방안에 따른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운영방안상 사전협의 제도의 주요 내용

가. 대상

운영방안은 일반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사전협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전협의 대상 기업결합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문제되지 않는 건이라도 사전협의 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시기 및 기한

운영방안상 사전협의 신청은 정식 신고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외에는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기간에도 제한이 없으며, 결합당사회사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정식 신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 절차

사전협의는 공용메일(merger@korea.kr)로 신청 및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대면회의 필요 시 사전협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회사측도 대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의 절차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내용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성이 적은 자료(재무정보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시장현황 등)은 제외 또는 추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의 경우 요구되는 자료의 수준은 정식 신고와 유사하여 자료 준비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으나, 사전협의 제도는 비교적 간략한 자료만으로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통보

협의 진행 개시·종료 및 협의결과는 메일로 통보됩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사전협의 결과가 메일로 통보됨에 따라 사전협의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고, 정식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정위가 사전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결합당사회사가 정식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는 구두 통보되거나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효과

사전협의 제도 이용 시 정식 신고 이후 불필요한 자료보완이 방지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협의와 정식 심사 사이의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Related Areas

공정거래

Contact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박해식 변호사

02-528-5645
parkhs@yulchon.com

이석준 외국변호사

02-528-5448
leesj@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jy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